

# 서울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 (도문열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42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3월 29일

발 의 자: 도문열, 강석주, 경기문,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영한,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숙자,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최유희,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3명)

## 1. 주문

- 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 구역 안 감면대상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최초 3년간 10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는 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동 2개 지역이나, 서울 여의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부산 문현동의 경우, 2017년 1개 기업에 100만원의 법인세 감면 이후 조세 지출이 전무한 상황으로 특례 조항 자체가 사문화된 실정임.
- 이처럼 여의도 일대가 대한민국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때문에 해외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외면하고 글로벌 금융산업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음.
- 반면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금융선진국은 서울과 달리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한국의 법인세율은 최대 25%, 소득세율은 45%이나, 홍콩은 각각 16.5%와 17%, 싱가포르는 17%와 22%로 서울에 비해 현저히 낮은 환경임.
- 심지어 외국인 법인이 고용을 창출할 경우 법인세를 3~4%p 낮춰주거나(홍콩), 본사를 이전하면 최대 5년간 법인세를 5~10%p 할인해주는(싱가포르) 등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월 “여의도 금융타운을 ‘금융허브특구’로 지정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한 바,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임.
- 이에 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의 금융중심지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다가오는 임시국회를 포함한 모든 법안 심사 일정에서 최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다. 기타 : 없음

#### 4. 이송처

- 국회, 기획재정부

# 서울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 구역 안 감면대상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3년간 10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는 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동 2개 지역이나, 서울 여의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부산 문현동의 경우, 2017년 1개 기업에 100만원의 법인세 감면 이후 조세 지출이 전무한 상황으로 특례 조항 자체가 사문화된 실정이다.

이처럼 여의도 일대가 대한민국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의 영향으로 해외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외면하고 글로벌 금융산업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반면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금융선진국은 서울과 달리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최대 25%, 소득세율은 45%이나, 홍콩은 각각 16.5%와 17%, 싱가포르는 17%와 22%로 서울에 비해 현저히 낮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심지어 홍콩과 싱가포르는 외국 법인이 고용을 창출할 경우 법인세를 3~4%p 낮춰주거나, 본사를 이전하면 최대 5년간 법인세를 5~10%p 할

인해주는 등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지엔(Z/Yen)에 따르면 2022년 아시아 주요 금융도시들의 국제금융센터지수는 싱가포르 3위, 홍콩 4위, 상하이 6위, 베이징 8위, 서울 11위로, 아시아 최고의 금융허브로 꼽혀온 홍콩이 정치적 리스크로 흔들리며 도약의 기회가 열렸지만 해묵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해외금융기관 유치에 한계가 역력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월 “여의도 금융타운을 ‘금융허브특구’로 지정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한 바,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의 금융중심지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다가오는 임시국회를 포함한 모든 법안 심사 일정에서 최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4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